

|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 <p><b>서울여자간호대학교</b><br/>1954</p> | <h2>학생생활상담소 운영규정</h2> | 문서번호 | 3-4-11   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제정일  | 2012. 12. 01.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일  | 2020. 11. 01.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 | 1/2          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(이하 “상담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상담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돋기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
2. 학과 적응을 돋기 위한 휴·복학자, 학사경고자 상담 및 기타 심층상담
3.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
4.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제공
5. 기타 상담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**제3조(조직)** ①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상담소장, 상담사 및 운영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.  
 ② 학생생활상담소 운영에 있어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생지도상담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쳐 실행한다.  
 ③ 학생들의 원활한 상담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 및 교무처, 산학협력처, 교수학습연구지원센터 및 외부전문상담기관과 적극 연계한다.

**제4조(상담소장)** ① 상담소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.

- ② 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.

  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3. 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상담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5조(상담사)** ① 상담사는 관련분야에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- ② 상담사의 업무는 개인 및 집단상담과 심리검사 실시 또는 정보제공을 주 업무로 한다.

**제6조(상담업무진행순서)** 상담업무는 상담신청서 작성(방문 또는 전화), 상담시간 예약·통보, 상담진행, 상담결과 기록·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.

**제7조(상담소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보호)** ① 상담소는 이용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 한다.

- ②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과 범례에 따른다.

|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<br><b>학생생활상담소 운영규정</b> | 문서번호 | 3-4-11        |             |
|  | 제정일  | 2012. 12. 01. |             |
|  | 개정일  | 2020. 11. 01. |             |
|  | 페이지  | 2/2           | 관리부서<br>학생처 |

- 제8조(행·재정적 지원)**
- ① 상담소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예산 등으로 충당한다.
  - ② 대학은 상담소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